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95
----------	-----

2018. 4. 5.(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최광옥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18년 3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3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8년 3월 23일

－ 제36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최광옥 의원)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의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지원·인력양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이 조례안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의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민간 이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 안 제9조에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데이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데이터의 이용 등에서 분야가 유사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 조례제정을 계기로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을 확대하고 충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 취지나 내용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795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363회)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광옥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18년 3월 14일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최광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5
----------	-----

발의연월일 : 2018년 3월 14일

발 의 자 : 최광옥, 연철흙, 박봉순,
박한범, 이연구, 임순묵

1. 제정이유

- 충청북도의 공공데이터를 도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지정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경제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지원·인력양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정보통신과와 협의함
- 나. 예산조치 : 관계없음.
- 라. 입법예고 : 2018. 3. 2 ~ 3. 12(10일간)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를 제공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하여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

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직속기관·출장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등)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부문계획 작성)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성과평가
- 2. 법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 3. 해당 연도의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작성지침에 따른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시행계획을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한다.

② 책임관은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충청북도 빅데이터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도지사는 이미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및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

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공표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공공데이터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및 산정기준)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부담 시키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전자기록매체 비용 등 일반 경비
2.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유지보수 비용
3. 제3자 권리 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권리이용 비용

③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비용이 제2항 각 호의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용목적, 데이터의 양, 제공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자와 협의를 통하여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납부 절차 및 감면비율 등의 사항은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품질관리)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3.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민간 협력)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도지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사항을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

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1호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6.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7.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 경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아이디어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 비용 발생 요인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시상금 및 행사 진행비용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9년도 예산 내역 : 28,000천원
 - 시상금 : 16,000천원
 - 평가수당 : 3,000천원
 - 홍보비 : 5,000천원
 - 운영비 : 4,000천원

나. 추계 결과 : '19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40,000천원 정도 소요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분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세출	140,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140,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6. 작성자 : 행정국 정보통신과장 임 병 윤